



의안 번호	제 6 호
의 결 연 월 일	2012. 1. 31.(화) (제 3 회)

의  
결  
사  
항

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개정(안)

국가지식재산위원회

제출자	국무총리실장 임종룡
제출 연 월 일	2012. 1. 31.(화)



## 1. 의결주문

- 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개정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## 2. 제안이유

- 특별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 또는 신설하여 특별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,
-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,
- 그 밖에 일부 조항의 체계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 
※ 근거 : 「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(운영세칙)

## 3. 주요내용

### (1) 특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보완·신설

#### □ 특별전문위원회의 구성 (案 제13조)

- (인원)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
- (위촉) 민간전문가 외에 관련 공무원과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위원도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함

#### □ 특별전문위원회의 운영 (案 제14조)

- (존속기한) 특별전문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되,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기한 연장
- (안건제출) 특별전문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안건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

## (2)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구성 및 기능 관련 규정 신설

### □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구성 (案 제16조, 제18조)

#### ○ (인력) 단장 1명과 직원으로 구성

- 단장 : 전문계약직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 일반직 공무원

- 직원 : 파견공무원, 전문계약직 공무원, 공공기관 파견자 등

※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·번역·운전담당직원 등 채용 가능

#### ○ (조직) 지식재산정책관(지식재산총괄정책과, 지식재산성과기반과), 지식재산진흥관(지식재산보호협력과, 지식재산창출활용과)으로 구성

※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기획단의 기능범위 내에서 기획단장이 정함

### □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주요기능 (案 제17조)

○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안건 작성 등

○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·조정

○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사·연구의 발굴·추진 및 사업의 지원

○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등

### □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운영 (案 제19조, 제20조)

○ 위원회의 정책 조사·연구 및 관련 비용 지급에 관한 근거 마련

○ 기획단 직원의 인사·복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

---

#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개정(안)

---

2012. 1. 31.



국가지식재산위원회

#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개정(안)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지식재산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와 실무운영위원회, 전문위원회, 특별전문위원회(이하 “산하위원회”라 한다) 및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과학기술부장관, 외교통상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지식경제부장관, 국가정보원장, 국무총리실장,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,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, 특허청장
2.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된다. 다만,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

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그 직을 대행할 수 있다.

**제3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때에는, 제2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2조제3항제1호의 위원(이하 “당연직 위원”이라 한다)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(이하 “고위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.

④ 위원회 회의는 상정안건에 대해 제출자가 보고를 한 후, 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심의·의결한다. 다만, 필요시 보고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
1. 회의 일시·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4조(안건의 제출)** ① 위원장, 위원회 위원 또는 영 제3조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 할 수 있다.

②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이나 제출자를 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위원회 간사가 제출한다. 이 경우 위원회 간사는 안건을 작성하고 발표할 사람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출 안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**제5조(서면의결)**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의결일자를 정하여 사전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야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일자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.

④ 서면의결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며, 모사전송,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.

**제6조(위원의 해촉 등)** ①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제2조제3항제2호의 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, 고의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



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 할 수 있다.

②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질병, 사고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임자를 위촉 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(前任)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### 제3장 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제7조(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실무운영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된다.

②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영 제14조에 따른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으로 구성 된다.

③ 실무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이 된다.

제8조(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) ① 실무운영위원회 회의는 실무운영위원장이 주재한다.

② 실무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,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위해 실무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
- ③ 실무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2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실무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직하위(直下位) 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.
- ⑥ 실무운영위원회의 상정안건은 실무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이 보고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하위 직급의 공무원이 안건을 보고할 수 있다.
- ⑦ 실무운영위원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이 의결권한 없이 실무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.
- ⑧ 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문서로 정리하여 관리해야 한다.

## 제4장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

**제9조(전문위원회의 구성)**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
2.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
3.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
4. 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
5.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

**제10조(전문위원회의 회의)** ①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전문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주재한다.

② 전문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전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전문위원장은 필요시 다른 산하위원회 위원, 전문가 등이 의결권한 없이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.

⑦ 전문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여야 하며, 회의 결과와 관

런 있는 다른 산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
**제11조(합동회의)** ①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 및 종합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합동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합동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합동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합동회의의 의장은 필요시 다른 산하위원회 위원, 전문가 등이 의결권한 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.

⑥ 합동회의는 회의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여야 하며, 회의 결과와 관련 있는 다른 산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
**제12조(전문위원의 해촉 등)** ①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,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전문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에게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이 질병, 사고 등으로 전문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 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(前任)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## 제5장 특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제13조(특별전문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장은 영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식 재산 정책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특별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특별전문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특별전문위원장”이라 한다.) 및 위원은 위원장이 사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,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

④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전문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한다.

제14조(특별전문위원회의 운영) ① 특별전문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되,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특별전문위원회는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위원회의 의결 없이 폐지된다. 다만, 목적 달성 등 존속 이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.

③ 특별전문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안건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15조(준용규정) 제10조, 제12조의 규정은 특별전문위원회 운영에 준용하되, 전문위원장을 특별전문위원장으로, 전문위원회를 특별전문위원회로 한다.

## 제6장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

제16조(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구성) ①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지식재산전략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은 단장 1명과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획단의 단장(이하 “기획단장”이라 한다)은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실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기획단의 직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, 전문계약직 공무원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자 및 민간기관·단체 또는 연구소 및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소속 기관·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자 등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거나,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무보조·

번역·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.

**제17조(기획단의 기능)**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2.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·검토 및 협의·조정
3.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·조정
4.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사·연구의 발굴·추진 및 사업의 지원
5.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
6. 그 밖에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

**제18조(하부조직 및 업무분장)** ① 기획단에는 기획단장 밑에 지식재산정책관과 지식재산진흥관을 둔다.

② 지식재산정책관에는 지식재산총괄정책과, 지식재산성과기반과를 두며, 지식재산진흥관에는 지식재산보호협력과, 지식재산창출활용과를 둔다.

③ 기획단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획단의 기능범위 내에서 기획단장이 정한다.

**제19조(조사·연구 의뢰)** 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

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0조(기획단 직원의 인사 및 복무)** ① 공무원으로서 기획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.

② 민간단체 및 기업,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소속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.

## 제7장 보 칙

**제21조(수당과 여비)** ①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,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서면의결에 참여한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등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, 안전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서면의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22조(실무사항)**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, 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

제23조(운영세칙 개정)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

## 부 칙

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서면의결서

- 회의명 : 제    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
- 서면의결사유 :
- 서면의결일자 :
-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	의결내용 可(○), 否(x)	의결이유 또는 의견

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국가지식재산위원회    위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)

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귀하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<u>지식재산 기본법</u>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와 실무운영위원회, <u>전문위원회 및 특별전문위원회(이하 “산하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위원회의 구성) &lt;신 설&gt;</p> <p>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국무총리와 <u>제2항 제2호</u>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</p> <p>② <u>위원은</u>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과학기술부장관, 외교통상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지식경제부장관, <u>국무총리실장, 국가정보원장,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,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, 특허청장</u></li> <li>2. (생략)</li> </ol>	<p>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<u>지식재산 기본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 및 동법 ----- ----- ----- <u>전문위원회, 특별전문위원회(이하 “산하위원회”라 한다) 및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<u>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제3항제2호</u> -----.</p> <p>③ <u>위원회의 위원은</u>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과학기술부장관, 외교통상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지식경제부장관, <u>국가정보원장, 국무총리실장,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,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, 특허청장</u>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3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<u>분기별 개최를</u>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때에는, <u>제2조 제2항제1호에</u>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<u>제2조제2항제1호의</u> 위원(이하 “당연직 위원”이라 한다)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(이하 “고위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.</p> <p>④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된다. 다만,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차장이 그 직을 대행할 수 있다.</p>	<p>④ <u>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된다. 다만,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그 직을 대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3조(위원회의 회의) ① -----  -- <u>분기 1회 개최를</u>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② -----  ----- <u>제2조</u>  <u>제3항제1호에</u> -----  -----.</p> <p>③ <u>제2조제3항제1호의</u>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⑤ 위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<u>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</u></li> <li>3. <u>상정된 안전명 및 심의결과</u></li> <li>4. <u>기타 주요 논의 사항</u></li> </ol> <p>제4조(안전의 제출) ① <u>위원장 또는 위원</u>은 안전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②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전이나 <u>안전의 성격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상정하기 곤란한 안전</u>은 위원회 간사가 제출한다. 이 경우 위원회 간사는 안전을 작성하고 발표할 사람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기구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제출 안전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	<p>④ <u>위원회 회의는 상정안전에 대해 제출자가 보고를 한 후, 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심의·의결한다. 다만, 필요시 보고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----- ----- ---- <u>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</u></li> <li>3. <u>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</u></li> <li>4. <u>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</li> </ol> <p>제4조(안전의 제출) ① <u>위원장, 위원회 위원 또는 영 제3조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제출자를 정하기 어려운 안전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제출 안전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서면의결) ①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<u>위원들에게</u> 알려야 한다.</p> <p>제6조(위원의 해촉 등) ①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<u>민간위원이</u>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, 고의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 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민간위원이</u> 질병, 사고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민간위원이</u> 해촉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임자를 위촉 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(前任) 위원의 <u>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	<p>제5조(서면의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의결일자를 정하여 사전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일자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위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위원의 해촉 등) ① ----- ----- <u>제2조제3항제2호의 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<u>대통령은 위촉위원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<u>위촉위원이</u> ----- ----- ----- <u>남은</u> ----- <u>기간으로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실무운영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<u>국무차장이 된다.</u></p> <p>②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영 제14조에 따른 <u>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</u>으로 구성 된다.</p> <p>③ 실무운영위원회의 간사는 <u>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</u>이 된다.</p>	<p>제7조(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-- ----- ----- ----- <u>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</u> -----.</p> <p>③ ----- <u>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</u>이 -----.</p>
<p>제8조(실무운영위원회 회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</u> 실무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③ 실무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때에는 <u>제2조제2항제1호에</u>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8조(실무운영위원회 회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실무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,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위해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제2조제3항제1호에</u> ----- -----.</p> <p>④ <u>실무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⑤ <u>실무운영위원회 회의는</u> 실무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이 <u>상정안전에 대해 보고를 한 후, 실무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안전을 검토한다.</u>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하위 직급의 공무원이 안전을 보고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제9조(전문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</li> <li>2. <u>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</u></li> <li>3. <u>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</u></li> <li>4. 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</li> <li>5.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</li> </ol> <p>제10조(전문위원회의 회의) ① <u>전문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전문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전문위원회를 주재한다.</u></p>	<p>⑥ <u>실무운영위원회의 상정안전은</u> ----- ----- <u>보고한다.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⑦ <u>실무운영위원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이 의결권한 없이 실무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(전문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</li> <li>2. <u>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</u></li> <li>3. <u>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</u></li> <li>4. 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</li> <li>5.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</li> </ol> <p>제10조(전문위원회의 회의) ① <u>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전문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주재한다.</u></p>



현행	개정안
<p>② <u>전문위원회는 월별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문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u></p>	<p>② <u>전문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를</u> ----- ----- <u>전문위원회 위원</u> ----- <u>수시로 개최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전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<u>각 위원에게</u> 알려야 한다. 다만, <u>긴급한 사정이나</u>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<u>전문위원회 위원에게</u>----- <u>긴급하거나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⑤ <u>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
<p>⑥ <u>전문위원장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전문위원장은 타 전문위원회 위원, 전문가 등이 표결권한 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⑥ <u>전문위원장은 필요시 다른 산하위원회 위원, 전문가 등이 의결권한</u> ----- -----.</p>
<p>⑦ <u>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는 문서로 정리하여 관리해야 한다.</u></p>	<p>⑦ <u>전문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여야 하며, 회의 결과와 관련 있는 다른 산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제12조(합동회의)</u> ①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 및 종합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<u>합동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합동회의의 의장은 <u>참여하는 전문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 <p>③ 합동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해당 <u>전문위원</u>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<u>긴급한 사정</u>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 합동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회</u>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1조(합동회의)</u> ① ----- ----- ----- <u>합동회의</u> <u>를 개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합동회의의 의장은 <u>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 <u>전문위원회 위원</u> <u>긴급하거나</u>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<u>개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⑤ <u>합동회의의 의장은 필요시 다른 산하위원회 위원, 전문가 등이 의결권한 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<u>합동회의는 회의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여야 하며, 회의 결과와 관련 있는 다른 산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3조(전문위원의 해촉 등)</u>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	<p><u>제12조(전문위원의 해촉 등)</u>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359 1205 598 124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제6장 신설&gt;</u></p>	<p data-bbox="847 271 1425 528">② <u>특별전문위원회는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위원회의 의결 없이 폐지된다. 다만, 목적 달성 등 존속이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47 562 1425 712">③ <u>특별전문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안건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646 819 1425 1077"><u>&lt;신설&gt; 제15조(준용규정) 제10조, 제12조의 규정은 특별전문위원회 운영에 준용하되, 전문위원장을 특별전문위원장으로, 전문위원회를 특별전문위원회로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31 1205 1409 124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6장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</u></p> <p data-bbox="646 1350 1425 1559"><u>&lt;신설&gt; 제16조(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구성) ①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지식재산전략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은 단장 1명과 직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47 1592 1425 1962">② <u>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획단의 단장(이하 “기획단장”이라 한다)은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실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646 271 785 309">&lt;신설&gt;</p> <p data-bbox="646 1059 785 1097">&lt;신설&gt;</p>	<p data-bbox="847 271 1425 696">③ 기획단의 직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, 전문계약직 공무원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자 및 민간기관·단체 또는 연구소 및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소속 기관·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자 등으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847 723 1425 1003">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거나,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무보조·번역·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815 1059 1425 1205">제17조(기획단의 기능)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data-bbox="863 1238 1425 1966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·검토 및 협의·조정</li> <li>3.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·조정</li> <li>4.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사·연구의 발굴·추진 및 사업의 지원</li> <li>5.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</li> <li>6. 그 밖에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646 271 783 309">&lt;신설&gt;</p>	<p data-bbox="815 271 1425 309"><u>제18조(하부조직 및 업무분장) ①</u></p> <p data-bbox="847 327 1425 477"><u>기획단에는 기획단장 밑에 지식재산정책관과 지식재산진흥관을 둔다.</u></p> <p data-bbox="847 506 1425 768"><u>② 지식재산정책관에는 지식재산총괄정책과, 지식재산성과기반과를 두며, 지식재산진흥관에는 지식재산보호협력과, 지식재산창출활용과를 둔다.</u></p> <p data-bbox="847 797 1425 947"><u>③ 기획단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획단의 기능범위 내에서 기획단장이 정한다.</u></p>
<p data-bbox="646 1010 783 1048">&lt;신설&gt;</p>	<p data-bbox="815 1010 1425 1048"><u>제19조(조사·연구 의뢰) ①</u> <u>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47 1301 1425 1496"><u>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 data-bbox="646 1563 783 1601">&lt;신설&gt;</p>	<p data-bbox="815 1563 1425 1601"><u>제20조(기획단 직원의 인사 및 복무)</u></p> <p data-bbox="847 1619 1425 1792"><u>① 공무원으로서 기획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47 1821 1425 1993"><u>② 민간단체 및 기업,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소속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5장 보칙</u></p> <p><u>제14조(운영지원)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에서 담당한다.</u></p> <p><u>제15조(수당과 여비)</u> ① ~ ② (생략)</p> <p><u>제16조(실무사항)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><u>제17조(운영세칙 개정) (생략)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7장 보칙</u>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제21조(수당과 여비)</u>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2조(실무사항) ----- 산하위원회, 기획단의 운영과 -----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><u>제23조(운영세칙 개정) (현행과 같음)</u></p>